

2026년 경상북도 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

행정안전부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경상북도 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4일
경 상 북 도 지 사

| | |
|---|-------------|
| I | 지정개요 |
|---|-------------|

- (지정규모)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
- (지정유형)
 - 경상북도지사 지정 : 예비마을기업
 -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: 신규(1회차),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 마을기업
- (지정기간) 예비마을기업 2년 / 그 외 제한없음
 - * 예비마을기업 :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
- (지원내용)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
 - 사업비 지원 :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

| 구 분 | 예비마을기업 | 마을기업 | | |
|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신규(1회차) | 재지정(2회차) | 고도화(3회차) |
| 보조금 | 사업비 미지원 | 5천만원 | 3천만원 | 2천만원 |
| 자부담 | - | 지원 보조금의 20% 이상 | | |
| 특 례 | • (인구감소지역)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15개 시군[행안부 고시 제2024-15호(2024. 2. 27.)] 마을기업 우선 선정 가능, 시군 주민 기준 완화(80%→70%), 자부담 경감(20%→10%) ※ 포항시, 경주시, 김천시, 구미시, 경산시, 칠곡군, 예천군 제외 • (청년마을기업) 지역주민 5인 이상 + 지역주민 비율 50% 이상 + 청년비율 30%~50% 마을기업 자부담 경감(20%→10%), 주민비율 완화(70%→50%), 심사 가점(3점) | | | |

- 자립 지원 : 교육, 경영 컨설팅, 네트워크 구축 등 참여기회 부여

| 공고 및 접수 | 신청서류 道 제출 | 현장실사 적격검토 | 道 심사 | 심사결과 제출 | 최종심사 및 선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(공고) 道 (접수) 시군 | → 시군 → 道 | → 시군, 중간지원기관 | → 道 심사위원회 | → 道 → 행정안전부 | → 행안부 심사위원회 |
| '25. 12. 4. ~ '25. 12. 17. | '25. 12. 18. 限 | '25. 12. 19. ~ '25. 12. 31. | '26. 1월초 | '26. 1. 16. 限 | '26. 2월말 |

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1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

- (접수기간) '25. 12. 4.(목) ~ 12. 17.(수) 18:00
- (접 수 처) 단체 또는 기업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- (신청방법) 방문접수(우편, 팩스, e-mail 접수 불가)

2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

- (실사기간) '25. 12. 19.(금) ~ 12. 31.(수)
- (주요내용)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,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道 추천
- ※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서류보완

3 道 심사위원회

- (심사일정) '26. 1월초
- (심사결과) [예비] 지정 여부 확정, [마을]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

4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

-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

【신청자격】

-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*

*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

1 마을기업 지정·운영요건

- (지역성)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읍면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|--|
| ① 지정요건 | |
| 1 |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 |
| 2 |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|
| 3 |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|
| 4 |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- 지역주민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,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-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,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 |
| ② 운영요건 | |
| 1 |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·소비·교환·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|
| 2 |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(70%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) |

《 지역의 범위(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) 》

- ‘읍·면·동’을 기본으로 함(행정동 기준,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)
- 설립 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, 예외적으로 ‘시·군·구’까지 확대하고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8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 - 단, ‘인구감소지역’은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 - ’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,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·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- ※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,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

<질의1>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에 공무원이 참여 가능한지?

⇒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불가능

※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5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

<질의2> 대의원이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, 지역주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?

⇒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, 대의원의 80%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- (기업성)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,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-------|--|
| ① 지정요건 | |
| 1 |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|
| 2 |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-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, 인적·기술적 역량*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* 회원의 경력·경험, 사업에 필요한 인·허가, 자격증 보유 |
| 3 |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-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(단,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) |
| ② 운영요건 | |
| 1 |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-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*의 30%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*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차감 이후의 금액 |
| 2 |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|
| 3 | 2012년 이전에 비(非)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,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) |

<질의1>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법인 설립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?

⇒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(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,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)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

<질의2>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?

⇒ 기업이 법인의 매출액, 월별 추진실적 등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을 입증

- (공동체성)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-------|---|
| ① 지정요건 | |
| 1 | <p>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과 법인 회원(출자자)이 동일해야 함 -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-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|
| 2 | <p>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※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|
| 3 | <p>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</p> |
| 4 | <p>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</p> |
| 5 | <p>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(출자자)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(균등)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이고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의 지분 합은 50% 이하여야 함 * 특수관계인 :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·자매 |
| ② 운영요건 | |
| 1 | <p>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(출자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,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함</p> |
| 2 | <p>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,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</p> |

<질의> 출자금액과 마을기업 자부담과의 관계는?

⇒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,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 가능

※ (예시) 기존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, 추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금액을 1천만원 출자한 경우,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

- (공공성)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|---|
| ① 지정요건 | |
| 1 |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|
| 2 |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, 일자리 및 소득 창출,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|
| 3 |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|
| 4 |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,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주민총회,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|
| 5 |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,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-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|
| ② 운영요건 | |
| 1 |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* 및 고용의 형평성**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* 일자리의 질 :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** 고용의 형평성 : 다양한 계층연령·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|
| 2 |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-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·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|

<질의> 마을기업의 임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, 마을기업의 임원을 사퇴해야 하는지?

⇒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으며, 법인 형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

- 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임직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

※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44조(임직원의 겸직금지) ⑤항

- (영농조합법인 등) 관련 규정 없음

② 마을기업 의무교육

- (교육목적)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지원
 - (신규교육) 1회차(신규)
 - (전문교육) 2회차(재지정)·3회차(고도화)
- (교육기관) (사)지역과소셜비즈(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)
- (심사 전)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

| 구분 | | 교육대상 | 교육명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예비 | | 회원 5인 이상 (대표자 포함) | 신규교육(입문 7시간) | 가점* |
| 마을 기업 | 신규(1회차) | 회원 5인 이상 (대표자 포함) | 신규교육(입문 7시간) | 필수 |
| | 재지정(2회차) | | 전문교육(기본 4시간) | |
| | 고도화(3회차) | | | |

* 가점 부여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
- (지정 후)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
 - (신규) 지정 후 ~ 보조금 교부 전
신규교육 중 기초(7시간) 및 심화(3시간) 교육 필수 이수
※ 신규교육 미이수 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(재지정·고도화) 지정 후 ~ 보조금 교부 전
전문교육 중 전문심화(2시간) 교육 필수 이수
※ '마을기업 성장단계별' 지정 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의무
- (이수확인) 이수확인증 또는 수료증 발급
- (이수효력) 교육수료일로부터 만 2년(고도화는 만 1년)
 -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道 심사 전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(미제출 시 심사 제외)
※ 도 심사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

【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】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
 - ※ 신규·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, 재도약, 우수, 모두애(愛)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
 -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IV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

| 구 분 | 제출서류 | 비 고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본 서류 | 공통 | • 사업신청서 | • [서식 1-1~4] 예비 및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| |
| | | • 회원 명단 | • [서식 2] (예비)마을기업 회원 명단 | |
| | | 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| • [서식 3]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| |
| | | • 법인등기부등본 | •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| |
| | | • 정관 | | |
| | | • 자부담 통장 | • 법인명의 통장(대표자 명의 X) - 자부담 이체 후 확인증 시군 제출 • 비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- 법인 설립 후 자금을 이체하고 확인증 시군 제출 • 기존 출자하여 확보한 법인 기금으로 자부담 활용 가능 - 법인 기금에서 자부담 일괄 사용 시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며, 출자금 명부 및 회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 | |
| | 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| • 법인등기부등본 상 출자자 명단 등 법인 출자자 전원 및 출자금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※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하여야 함 | | |
| | 추가 (회차별) | 예비 | • 재무제표 | • '23~'24년 재무제표 |
| | | 신규 (1회차) | • 입문교육 수료증 | •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[(사)지역과소설비즈] |
| | | 재지정 (2회차) | • 전문교육 수료증 | •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[(사)지역과소설비즈] |
| 고도화 (3회차) | | • 실적보고서 | • [서식 4] 마을기업 실적보고서(전년도 실적) | |
| | | • 정산서류 | • 재지정-1회차 정산서류/고도화-2회차 정산서류 | |
| | | • 재무제표 | • 전년도 재무제표 | |
| 기타 증빙 서류 |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| | •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| |
| |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 | | • 계약기간 명시 | |
| | •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) | | • 토지이용규제확인서,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| |
| | •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| | • 여성 마을기업 대표, 청년마을기업, 교육 수료증 등 •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(상용근로자 수 확인용) | |
| | •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| | • 법인 회의록 등 - 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| |

V

기타 안내사항

-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완료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,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추가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※ 기한 내 미보완,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.
-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
- 신청기업은 시군 담당부서의 신청 및 구비·증빙서류 확인과 지원기관(시군 포함)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등 각종 심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
- 심사과정에서의 검토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의 규정을 따르며, 시행지침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(기업)에 있음

VI

문 의 처

| 구 분 | 부 서 | 전 화 번 호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경북도 | 민생경제과 | 054-880-2617 |
| 지원기관 | 지역과소셜비즈 | 053-944-4002 |
| 포항시 | 일자리청년과 | 054-270-3923 |
| 경주시 | 경제정책과 | 054-779-6247 |
| 김천시 | 일자리경제과 | 054-420-6707 |
| 안동시 | 신성장산업과 | 054-840-6233 |
| 구미시 | 일자리경제과 | 054-480-2643 |
| 영주시 | 일자리경제과 | 054-639-6142 |
| 영천시 | 일자리노사과 | 054-330-6712 |
| 상주시 | 미래정책실 | 054-537-7140 |
| 문경시 | 일자리경제과 | 054-550-6767 |
| 경산시 | 일자리경제과 | 053-810-5123 |

| 구 분 | 부 서 | 전 화 번 호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성군 | 유통정책과 | 054-830-6506 |
| 청송군 | 기획감사실 | 054-870-6454 |
| 영양군 | 농촌경제과 | 054-680-6323 |
| 영덕군 | 일자리경제과 | 054-730-6244 |
| 청도군 | 새마을경제과 | 054-370-2236 |
| 고령군 | 인구정책과 | 054-950-6583 |
| 성주군 | 기업경제과 | 054-930-6713 |
| 칠곡군 | 일자리경제과 | 054-979-6547 |
| 예천군 | 지역경제과 | 054-650-6860 |
| 봉화군 | 인구전략과 | 054-679-6188 |
| 울진군 | 일자리경제과 | 054-789-6473 |
| 울릉군 | 경제투자유치실 | 054-790-6258 |

붙임 1 마을기업 유형

①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

- (예비)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 기업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
- (신규)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
- (재지정)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
- (고도화)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

② 사업성격에 따른 구분

- (지역자원 활용형)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기업
 - 사업계획서에 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
 - 지역특산물 가공, 관광·체험, 지역 먹거리(로컬푸드) 등
- (사회서비스 제공형)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
 - 정관,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, 사업비의 50%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
 -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, 공동육아, 방과후학교, 주거복지 등
- (마을 관리형) 마을자산 운영,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
 - 정관, 사업계획서 등에 마을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, 사업비의 50%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
 - 마을주차장 운영,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

- ▶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
- ▶ 행정안전부나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지정심사 시 유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유형을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
③ 청년마을기업

- (정의) 청년*들이 주도하여 설립·운영하는 (예비)마을기업
 - *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
- (혜택) ①자부담 경감(20%→10%), ②지역주민비율 완화(70%→50%), ③심사 가점([2점] 예비, [2점] 신규, [3점] 재지정, 고도화)
- (회원요건)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, 지역주민비율 및 청년회원비율 충족

<질의> 회원(출자자) 수에 따른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은? (청년회원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)
 ⇒ - 회원(출자자) 5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3인 이상
 - 회원(출자자) 6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3인 이상
 - 회원(출자자) 10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5인 이상

- (청년회원비율)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(30%~50%)

《 청년회원비율 기준 》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시군 청년인구비율* | 15% 미만 | 15% ~ 20% 이하 | 20% 초과 |
| 청년회원비율 | 30% | 40% | 50% |

*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.mois.go.kr 참고(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적용)

- 청년마을기업으로 2·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회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- 청년마을기업의 경우,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·휴학생 또는 졸업생*(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)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
 - *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
- (청년비율 유지) 청년마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회원비율 등 청년마을기업의 회원요건을 유지하여야 함
 - 지정 당시 청년이었던 회원이 지정된 연도에 청년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청년회원으로 간주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회원 변경
 -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또는 지정 취소됨
- (기타사항) 청년마을기업도 특별히 명시된 혜택·요건 외에는 일반 (예비)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이 필요하며,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

《 시군별 청년회원비율 》

(단위 : 명)

| 연번 | 시군 | 인구 수 | 청년 수 | 청년인구비율 | 청년회원비율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 | 포항시 | 491,581 | 79,264 | 16.1% | 40% |
| 2 | 경주시 | 244,769 | 34,899 | 14.3% | 30% |
| 3 | 김천시 | 135,446 | 19,383 | 14.3% | 30% |
| 4 | 안동시 | 153,159 | 24,425 | 15.9% | 40% |
| 5 | 구미시 | 404,820 | 79,449 | 19.6% | 40% |
| 6 | 영주시 | 98,870 | 13,232 | 13.4% | 30% |
| 7 | 영천시 | 98,143 | 12,230 | 12.5% | 30% |
| 8 | 상주시 | 91,850 | 9,909 | 10.8% | 30% |
| 9 | 문경시 | 67,257 | 7,704 | 11.5% | 30% |
| 10 | 경산시 | 266,398 | 53,570 | 20.1% | 50% |
| 11 | 의성군 | 48,690 | 3,692 | 7.6% | 30% |
| 12 | 청송군 | 23,716 | 2,080 | 8.8% | 30% |
| 13 | 영양군 | 15,328 | 1,299 | 8.5% | 30% |
| 14 | 영덕군 | 33,210 | 2,880 | 8.7% | 30% |
| 15 | 청도군 | 40,582 | 3,201 | 7.9% | 30% |
| 16 | 고령군 | 30,062 | 2,992 | 10.0% | 30% |
| 17 | 성주군 | 41,452 | 3,914 | 9.4% | 30% |
| 18 | 칠곡군 | 107,383 | 15,167 | 14.1% | 30% |
| 19 | 예천군 | 54,609 | 6,024 | 11.0% | 30% |
| 20 | 봉화군 | 28,836 | 2,192 | 7.6% | 30% |
| 21 | 울진군 | 46,124 | 6,049 | 13.1% | 30% |
| 22 | 울릉군 | 9,099 | 1,224 | 13.5% | 30% |

※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(2024년 12월말 기준)

붙임 2 심사기준

□ 예비마을기업

| 심사항목 | 배점 | 구분 | 심사지표 |
|------------|------|--|--|
| 공동체성 | 30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자자수 : (상) 20인 이상 (중) 10 ~ 19인, (하) 5 ~ 9인 1인 최대 지분율, 특수관계인 지분율 |
| |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|
| 공공성 | 20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,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(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) |
| |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|
| 지역성 | 20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|
| |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(지역자원 활용,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, 마을 관리 등) |
| 기업성 | 20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|
| |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모델의 차별성, 관련 사업수행 실적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·HACCP 유무, 관련 전문가 보유(자격증 보유자,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)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판매가능성(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)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|
| 사업 계획의 적정성 | 10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단가 산출의 적정성, 연내 집행 가능성 |
| 가점 | 최대 5 | 3 (택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·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(대상사업 : 참고) 상용근로자수 : (3) 5인 이상, (2) 4~2인, (1) 1인 |
| | | 2 (택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| |

※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□ 신규(1회차) 마을기업

| 심사항목 | 배점 | 구분 | 심사지표 |
|------------|------|--|--|
| 공동체성 | 30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자자수 : (상) 20인 이상 (중) 10 ~ 19인, (하) 5 ~ 9인 1인 최대 지분율, 특수관계인 지분율 입문교육 이수 |
| |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|
| 공공성 | 20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,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(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) |
| |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|
| 지역성 | 20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|
| |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(지역자원 활용,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, 마을 관리 등) |
| 기업성 | 20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|
| |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모델의 차별성, 관련 사업수행 실적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·HACCP 유무, 관련 전문가 보유(자격증 보유자,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)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판매가능성(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)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|
| 사업 계획의 적정성 | 10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단가 산출의 적정성, 연내 집행 가능성 |
| 가점 | 최대 5 | 3 (택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(중도포기·취소한 경우 제외)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·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(대상사업 : 참고) 상용근로자수 : (3) 5인이상, (2) 4~2인, (1) 1인 |
| | | 2 (택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| |

※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《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》

| 구분 | 소관 | 사업명 |
|----|-------|---|
| 1 | 국조실 | 생활SOC 복합화 사업 |
| 2 | 교육부 |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|
| 3 | 국토부 |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|
| 4 | 국토부 | 도시재생 뉴딜사업 |
| 5 | 국토부 | 도시재생 예비사업 |
| 6 | 농식품부 |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|
| 7 | 농식품부 |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|
| 8 | 농식품부 |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|
| 9 | 농식품부 | 귀농귀촌 지원사업(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) |
| 10 | 문체부 | 관광두레 사업 |
| 11 | 복지부 |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|
| 12 | 복지부 |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|
| 13 | 복지부 |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|
| 14 | 산림청 |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|
| 15 | 산림청 |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|
| 16 | 여가부 |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|
| 17 | 해수부 |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|
| 18 | 해수부 | 어촌뉴딜300 |
| 19 | 환경부 |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|
| 20 | 국가유산청 | 우리고장 국가유산(무형유산 포함) 활용 사업 |
| 21 | 국가유산청 |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|
| 22 | 행정안전부 |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|
| 23 | 행정안전부 | 정보화마을 |
| 24 | 행정안전부 | 청년공동체 육성사업 |
| 25 | 행정안전부 | 주민자치회 관련사업(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) |
| 26 | 기타 | 그 밖에 일자리 창출,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(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) |

□ 재지정(2회차) 마을기업

| 심사항목 | 배점 | 심사지표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
| 공동체성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(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, 회원 규모, 출자액 증가 정도 등) •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• 마을기업 설립·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·의견수렴 노력 •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• 전문교육 이수 |
| 공공성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• 사회공헌활동의 실적(정량, 정성적 성과) •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•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·유지 노력 |
| 지역성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(지역 내 사업장 소재, 지역자원 활용 정도, 지역주민비율) •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•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•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|
| 기업성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 실적(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·역량 보유 유무) •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(매출 및 이익 등) • 발전가능성(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) •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• 지속가능성(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) |
| 사업 관리·계획의 적정성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관리의 충실성(회계 관리, 지도·점검 협조 등 포함) •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, 계획 이행의 충실성(보조금 집행실적 포함) •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• 단가 산출의 적정성 |
|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•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|
| 가점 | 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•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 • 상용근로자수 : (3) 5인이상, (2) 4~2인, (1) 1인 <p>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 |

※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□ 고도화(3회차) 마을기업

| 심사항목 | 배점 | 심사지표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
| 공동체성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(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, 회원 규모, 출자액 증가 정도 등) •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• 마을기업 설립·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·의견수렴 노력 •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• 전문교육 이수 |
| 공공성 | 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• 사회공헌활동의 실적(정량, 정성적 성과) •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•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·유지 노력 |
| 지역성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(지역 내 사업장 소재, 지역자원 활용 정도, 지역주민비율) •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•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•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|
| 기업성 | 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 실적(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·역량 보유 유무) •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(매출 및 이익 등) • 발전가능성(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) •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• 지속가능성(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) |
| 사업계획의 적정성 (실적 포함)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, 계획 이행의 충실성(보조금 집행실적 포함) • 사업 관리의 성실성(회계 관리, 지도·점검 협조 등 포함) •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• 단가 산출의 적정성 |
|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•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|
| 가점 | 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•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 • 상용근로자수 : (3) 5인이상, (2) 4~2인, (1) 1인 <p>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 |

※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붙임 3 사업비 편성기준

▶ (사업비) 보조금 + 자부담

- (보조금)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
 - (자부담)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(보조금의 10~20% 이상)
- ※ (예시) 보조금이 1,000만원인 경우, 자부담액은 200만원 이상(이 경우 사업비는 1,200만원)

【마을기업】

① 인건비(보수·일용임금)

- 총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 - ※ 사회서비스 제공형,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%까지 편성 가능
- 마을기업 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로 마을기업의 대표, 이사,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*
 - * 보조사업비(보조금 및 자부담금)가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
-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 고용시,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
- 인건비는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

<질의1> 인건비에 4대 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포함이 가능한지?
⇒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등은 간접인건비로 포함 가능함

② 운영비

《일반수용비》

-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
 - 포장재는 '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'에 편성하고 사업비의 10% 이하로 편성
- 전문가 활용비
 - 외래강사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
 - 마을기업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) 및 회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
 - 강사비, 컨설팅 비용은 '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'을 준용하되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

《 임차료 》

-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
《 재료비 》

-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
《 기타 》

- 기타 항목*의 총합 : 총사업비의 3% 이내로 편성

* '일반수용비' 중 '사무용품 구입비', '소모성 물품 구입비' '공공요금 및 제세'

③ 건설비(시설비)

-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% 미만으로 편성·집행 가능

④ 자산취득비

-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, 한시적(1~2개월)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
-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
※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

【 예비마을기업 】

-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, 교육,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
- 그 외의 사항은 '마을기업 사업비 편성' 과 동일

《 (예비)마을기업 회계 비목 》

| 보조비목 코드/명 | 보조세목 코드/명 | 세부항목 및 설명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[110] 인건비 | [01] 보수 |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|
| | [04] 일용임금 | 일용직,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|
| [210] 운영비 | [01] 일반수용비 | 1. 사무용품 구입비 |
| | | 2. 인쇄비 및 유인비 - 책자, 전단,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|
| | | 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현수막,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|
| | | 4. 소모성 물품 구입비 |
| | | 5. 광고료 및 광고료 - tv, 신문, 잡지,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|
| | | 6. 전문가 활용비 -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|
| | [02] 공공요금 및 제세 | 1. 공공요금 - 우편요금, 전화요금, 전기가스료, 상하수도료,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|
| | [07] 임차료 | 1.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 |
| | [09] 시설장비 유지비 | 1. 건물 및 건축설비(구축물, 기계장치), 공구, 기구, 비품,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.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(노무비와 제비용 포함) |
| | [11] 재료비 |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(식물 및 종자 등 포함) |
| [420] 건설비 | [03] 시설비 | 1. 건물, 공작물, 구축물, 대규모 기계장치,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.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·노임·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. 건물, 기계, 기구,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(재료비 포함)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|
| [430] 유형 자산 | [01] 자산취득비 | 1. 건물 및 대규모 기계, 기구, 차량 등의 취득비 2. 차량, 운반구 및 공구·기구 비품 3.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. 서류함, 책상, 의자,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|